

case  
5

## 스크루·너트 드라이버

### 요약

사례명	스크루·너트 드라이버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HQ H305966 (2020.04.16.)
사실관계	중국에서 강철을 가공하여 제조된 샤프트와 칼라를 대만으로 수입한 후, 대만에서 제조된 두 가지 비트 및 플라스틱 손잡이와 결합하여 다기능 수공구인 스크루·너트 드라이버 완성
쟁점 및 판정	<p>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GreatNeck 6-in-1 Screwdriver는 제품의 명칭상 스크루 드라이버로 표기되나, 실제로는 교체 가능한 비트를 통해 스크루 드라이버와 너트 드라이버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로, 핵심 부품인 샤프트를 손잡이에 결합함으로써 양 기능이 모두 구현됨</li><li>동 물품은 교체 가능한 비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분리 및 재조립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, 이때 비트와 결합되는 샤프트는 완제품의 최종 형상과 핵심 구조를 형성하고 제품이 완전히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요 부품에 해당하여, 완제품의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됨</li><li>핵심 부품인 샤프트는 기능이 완성된 상태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, 대만에서의 조립 과정은 실질적인 가공 없는 단순 결합에 불과하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</li></ul>
근거법령	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 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

## I 판정사례<sup>3)</sup>

### 사례명 [스크루·너트 드라이버]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HQ H305966 (2020.04.16.)

#### 사실관계

요청자 Great Neck (대리인: Mallory Alexander International Logistics)

제품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GreatNeck 6-in-1 Screwdriver (모델명: SKU SD4B)</li> </ul>	
제품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플라스틱 손잡이</li> <li>강철제 원통형 샤프트</li> <li>교체 가능한 양면 비트 2개</li> </ul>	
제품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기능 수공구로서 너트 드라이버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 교체 가능한 비트를 장착하여 스크루 드라이버로 사용</li> </ul>	
제품 완제품 HTSU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8205.40.00</li> </ul>	

#### 제조공정



- 상세공정
1. 중국에서 강철을 가공하여 샤프트(shaft) 및 칼라(collar) 제조
  2. 중국산 샤프트 및 칼라를 벌크 형태로 대만 수출
  3. 대만 제조 공정
    - 두 가지 비트 및 플라스틱 손잡이 제조
    - 손잡이에 칼라 압입
    - 샤프트에 비트 삽입 후 손잡이에 결합
    - 제품 라벨 부착 및 포장
  4. 미국 수출

3)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

## 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## 관련 법령 및 분석

1

##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## 관련 법령 검토

- ▣ **『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』**에 따르면,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, 지워지지 않게,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
- ▣ **『19 C.F.R. § 134.1(b)』**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,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해야 함
  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❖ 참고 판례: *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*, 27 C.C.P.A. 267 (1940)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*, 69 CCPA 151 (1982)

- 부품이나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지를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, 해당 부품이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

❖ 참고 판례: *Belcrest Linens v. United States*, 573 F. Supp. 1149 (Ct. Int'l Trade 1983), aff'd, 741 F.2d 1368 (Fed. Cir. 1984)

- 반면,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,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

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*, 3 C.I.T. 220, 542 F. Supp. 1026 (1982)

-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(totality of the circumstances)하여 사례별 (case-by-case)로 이루어지며, 이때, 부품들의 원산지,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,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, 성질,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음
-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, 물품의 본질적 특성 (essential character) 역시 고려함

❖ 참고 판례: *Uniroyal Inc. v. United States*, 542 F. Supp. 1026 (1982)

-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밀창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,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

❖ 참고 판례: *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. United States*, 10 C.I.T. 48, 61, 628 F. Supp. 978, 991 (1986)

-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으로 미국 내에서 완제품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경우, 완제품 오렌지 주스의 본질적 특성은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에 있으므로,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

## 관련 법령 및 분석

- 신청인은 NY N024981 사례를 근거로, 비트는 손잡이와 샤프트 없이도 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스크루 드라이버의 본질적 특성(essential character)은 대만에서 제조한 비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함

### 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NY N024981 (2008.03.20.)*

- 사례 대만에서 제조된 날(blade)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, 중국에서 중국산 손잡이와 조립하여 스크루 드라이버 완성
- 판정 손잡이가 중국에서 부착되었더라도 해당 스크루 드라이버가 새로운 명칭, 성질 및 용도를 갖는 물품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상 완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

- CBP는 N024981 사례가 본질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, 본 사안의 스크루·너트 드라이버는 너트 드라이버와 스크루 드라이버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라는 점에서 N024981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함

### 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731460 (1989.05.26.)*

- 사례 양면 사용이 가능한 스크루 드라이버 비트가 벌크 상태로 미국에 수입되어 나사(screws) 및 무선 스크루 드라이버와 함께 세트로 재포장됨
- 판정 비트가 수입 시점에 완성품으로 조립되도록 설계되었으며, 미국에서의 재포장은 단순한 제조 과정에 불과하여 물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판단

## 판정 결과

- GreatNeck 6-in-1 Screwdriver는 제품의 명칭상 스크루 드라이버로 표기되나, 실제로는 교체 가능한 비트를 통해 스크루 드라이버와 너트 드라이버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로, 핵심 부품인 샤프트를 손잡이에 결합함으로써 양 기능이 모두 구현됨
- 동 물품은 교체 가능한 비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분리 및 재조립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, 이때 비트와 결합되는 샤프트는 완제품의 최종 형상과 핵심 구조를 형성하고 제품이 완전히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요 부품에 해당하여 완제품의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됨
- 핵심 부품인 샤프트는 기능이 완성된 상태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, 대만에서의 조립 과정은 실질적인 가공 없는 단순 결합에 불과하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

## 결론

- ✓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핵심 부품인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

## II 시사점

- 본 사안 및 N024981 사례와 같이 최종 제품의 명칭이 스크루 드라이버로 동일할지라도 실제로 최종 제품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원산지판정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

 참고자료

- CBP Ruling HQ H305966 (2020.04.16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H305966>
- CBP Ruling NY N024981 (2008.03.20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024981>
- CBP Ruling HQ 731460 (1989.05.26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731460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304&num=0&edition=prelim>
- 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 (1940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1707/united-states-v-gibson-thomsen-co/?q=United+States+v.+Gibson-Thomsen+Co>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>
- Belcrest Linens v. United States (1984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309750/belcrest-linens-v-united-states/>
- 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 (1983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283980/uniroyal-inc-v-united-states/>
- National Juice Products Ass'n v. United States (1986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596009/national-juice-products-assn-v-united-states/?q=National+Juice+Products+Association+v.+United+States>